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50816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11. 2.

판결 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262,792원 및 그 중 19,943,54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들 사이에 별지 임차권의 표시 기재 임차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10. 29.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20,262,792원 및 그 중 19,943,542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2013. 5. 7.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대상을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로,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5. 7.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과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되, 이행일 이후 그 이행금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가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5%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변제기한을 2018. 5. 7.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4. 6. 10.경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냈다. 원고는 2014. 11. 28.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291,802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348,2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9,943,542원(=20,291,802원 - 348,260원)이 되었다. 원고는 또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322,800원을 지출한 뒤 3,550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319,250원(=322,800원 - 3,550원)이 되었다.

나. 재산의 처분

피고들은 2006. 6. 20. 혼인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는데, 2015. 3. 30. 협의이혼하였고, 3남의 양육자로는 피고 B를 지정하였다.

피고 A은 협의이혼 전인 2014. 10. 29. 피고 B에게 별지 임차권의 표시 기재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262,792원(= 대위변제금 잔액 19,943,542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319,2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9,943,5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절반인 3,000만 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또는 가중하지 않았고,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잃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성이 없으며,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로 인하여 피고 A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 또는 가중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과 서울 강북구 C건물 14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그 반환금 6,500만 원이 있고,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무 20,262,792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채무 1,6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에도 피고 A의 순재산은 28,737,208원(= 위 C건물 14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그 반환금 6,500만 원- 이 사건 신용보증 구상금채무 20,262,792원 - 전세자금대출채무 1,600만 원)이 남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종효

별지

임차권의 표시

피고 A이 소외 D과 사이에 체결한 "서울 동대문구 E 2층 방2개" 부동산에 관한 2010.

5. 13.자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소외 D에게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끝.